

23. 建設工事 産災保險 一括適用 案内

資料提供：勤勞福祉公團

【 관련 법 조 항 】

-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(당연적용)
- 산재보험법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(임의적용)
- 산재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(신고절차 등)

1. 일괄적용 종류별 대상 요건 및 성립절차

종 류 별	근거법규	대 상 요 건	처 리 절 차
당연 일괄적용	산재보험 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	1)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. 2)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. 3) 각각의 사업은 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 한 사업에 속할 것. 4) 건설업자, 주택사업자, 전기사 업법에 의한 공사업자, 전기 통 신공사법에 의한 공사업자로 서 당해 보험년도 2년전('94년 도)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 이고 당해 보험년도 초일 현재 4천만원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중에 있는 사업	*성립신고 1) 당해 보험년도 초일부 터 14일('96. 1. 14까 지)이내에 [동종사업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 립신고서]를 근로복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→결정 통지 2)첨부서류 -재무제표 -건설공사 실적 보고서

종 류 별	근거법규	대 상 요 건	처 리 절 차
임의 일괄적용	산재보험 법 제9조 제3항 및 동시행규 칙 제9조	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이외의 사 업으로서 1)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. 2)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. 3) 각각의 사업은 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 한 사업에 속할 것.	*승인 신청 1) 당해 보험년도 개시일 7일전('95. 12. 23)까 지 [동종사업 일괄적 용 승인 신청서]를 근 로복지 공단 관할 지 역본부 및 지사에 제 출→승인결정통지 2) 첨부서류 - 재무제표 -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-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각서

2. 동제도 가입에 필요한 참고사항

가. 하나의 사업체에 사업종류별로 당연 일괄적용과 임의 일괄적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
-사업종류별로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[동종사업 일괄적용 보험관계
성립 신고서]를 제출하고 사업종류별로 총공사실적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[동종
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서]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.

나. 총공사실적

-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한 사업종류별 전전년도('94년도) 총공사실적(관, 사급 자재지
급시 재료시가 환산액 포함)을 말하며, 원수급 공사금액(하도급 공사금액 포함), 자
기 공사금액은 포함하되 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승인된 하수급공사금
액은 원수급인의 공사실적에서 제외하고 하수급인의 공사 실적에 포함됨.

다. 건설업체 본사적용

-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일 경우에도 본사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일

때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함.

라. 연간단가공사 계약 업체에 대한 일괄 임의가입 안내

— 당해년도에 시공될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계약하고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행하는 전기 공사업자 및 수도 공사업자에 대하여도 임의적용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연간단가예약 공사전체는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같음되기 때문에 단위공사별 사업개시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.

※ 문의전화 : 6700-403

‘설마’하면 부실시공 ‘혹시’하면 성실시공